

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

2023. 7. 17.

금 융 위 원 회
금 융 국 제 화 대 응 단

목 차

I. 추진배경	1
II. 현황 및 문제점	2
III.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	4
1. 해외 자회사 인수·설립 관련 규제 완화	5
2.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 완화	6
3. 국내적용을 전제로 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	9
4. 해외진출 관련 보고·공시 체계 전면개편	10
5. 건전성·내부통제 개선 중심의 검사·제재	12
IV. 기대효과	14
V. 향후계획	15
[붙임] 규제개선 추진일정	16

1. 추진 배경

- 실물경제가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어 국내 시장에만 머물러서는 금융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기대하기 곤란
 - 국내시장의 포화상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화를 통한 금융산업 외연 확대가 필수적
- 최근 우리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*이 신시장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, 자본규모나 수익성, 수익구조 등 측면에서 아직까지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
 - * '22년말 현재 국내 금융회사는 46개국에 진출하여 총 490개 점포를 운영중
 - 금융·보험서비스의 수출 규모*도 전체 서비스 수출의 3% 내외로 영국(18%), OECD 평균(11.9%)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
 - * 국제수지중 비거주자와 서비스 거래로 발생한 서비스收入 항목을 서비스 수출로 간주
- 이에 따라, 금융위는 '23년 업무보고 시 12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'금융 글로벌화를 통한 금융산업 육성'을 제시('23.1.30)
 -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추진할 협의체로 민간 금융권,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'금융산업 글로벌화 TF*' 발족(3.13.)
 - * [금융권] 은행·생보·손보·금투·여신협회, [연구원] 금융·보험·자본시장연구원 [유관기관] 금감원/국민연금/KIC/거래소/산은/수은
 - TF를 지원하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종합방안 마련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 조직인 '금융국제화 대응단' 신설(단장 : 금융위 부위원장)
- ⇒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업계·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우선적으로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

II. 현황 및 문제점

◆ 릴레이 세미나(금융국제화대응단장 주제) 및 업권별 간담회* 통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규제개선 과제 발굴

* (세미나) 금융투자(3.14./4.17./5.12.), 핀테크(4.24), 보험(5.3), 여신(6.14), 종합(6.19) 등 총 7회
(간담회) 은행·금투·보험·여신·핀테크·인프라 등 총 6회

①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제한으로 해외에서 이중 산업간 융합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들에 비해 불리하며, 신속한 자금지원도 어려움

○ 금융회사는 해외에서도 금융업과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부수업무 영위, 자회사 출자가 불가능하여 사업 확장에 애로

* (예시) 금융지주계열의 자회사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금융회사 외 출자가 제한되어 자동차금융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해외에서 렌터카업체 인수 불가

○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신용공여가 제한적(자기자본 대비 한도 존재)이며, 자금 지원 방식도 규제

* (예시) 보험사는 자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은 가능하나 담보제공은 불가

②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된 규제로 인해 국내 및 현지의 유리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여 경쟁력이 저하

○ 현지법에 의해 허용된 영업활동이 국내 규제로 인해 제약

* (예시)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사무소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, 국내 규정상 해외사무소는 영업이 불가

○ 현지의 특수한 규제에 의해 국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 발생

* (예시) 진출국 현지 규제로 인해 최소지분을 임직원 명의로 의무보유하는 경우, 국내의 특례 적용 요건(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보유)에 미해당

③ 보고·공시 중복 의무 발생 등으로 과도한 행정부담 발생

- 다수 법령에서 중복 보고 절차를 규정하거나, 사전 신고에 대한 기한 설정 등으로 현지 행정절차 장기화시 반복 보고 필요
 - * (예시) 동일한 해외투자에 대해 금융업권법과 해외진출규정에서 각각 신고·보고 의무 규정
- 현지 금융업 인가시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인한 제재(기관주의)임에도 결격사유로 보아 소명하는데 상당한 노력 소요

④ 국내의 네트워킹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 필요

- 금융인프라 수출 분야 컨트롤 타워 역할(기관간 연계, 정보공유 등)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며, 경제협력기금 등의 금융분야 활용 활성화 필요
- 현지 금융당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, 해외시장 정보 제공 활성화 및 해외진출 컨설팅 확대 등 요청

◆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애로사항 청취 결과, '국내 규제 개선 요구'와 '현지영업 관련 애로사항 해소*'로 구분

- 이 중 국내 규제개선과 관련하여, 해외 신사업 추진을 저해하고 영업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신속하게 제거해 나갈 필요

⇒ 금융회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도록 유연한 규제환경으로 전환함으로써, 우리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지원

* 현지영업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방안은 '23.하반기 별도 발표

III.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

< 해외진출 규제혁신의 목표 >

- ◆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영업 확대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**글로벌 경쟁력을 확보**하도록 하는 것이 규제혁신의 궁극적인 목표
→ 아래 5대 원칙에 따라 건의과제 검토하였음

1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제한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→ **해외 자회사 인수·설립 관련 규제 폭넓게 완화**

- (주요사례)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해외 비금융회사 인수 허용,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가 금융회사 인수 허용 등

2 해외 진출 또는 현지 영업을 위한 자금 조달 어려움 → 해외 자회사에 대한 **자금지원 제한 완화** 방안 모색

- (주요사례) 해외진출 초기 은행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초과 한시적 허용,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해 담보제공 허용 등

3 국내 제도의 현지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→ 국내 적용을 중심으로 마련된 **규제의 합리적 개선**

- (주요사례) 현지법이 인정하는 경우 해외사무소에 영업활동 허용, 해외금융기관에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표시 대출채권 매각 허용 등

4 과도한 보고·공시 부담 → **보고·공시 규정의 유연한 적용** 기준 마련

- (주요사례) 여전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및 주식 취득 보고 절차 완화, 역외금융회사 투자 관련 신고 부담 완화 등

5 해외진출 확대에 상응하는 리스크관리 역량 필요 → **건전성·내부통제 개선** 중심의 검사·제재

- (주요사례) 금융회사 기관제재시 '기관제재 같음 MOU등 활용' 활성화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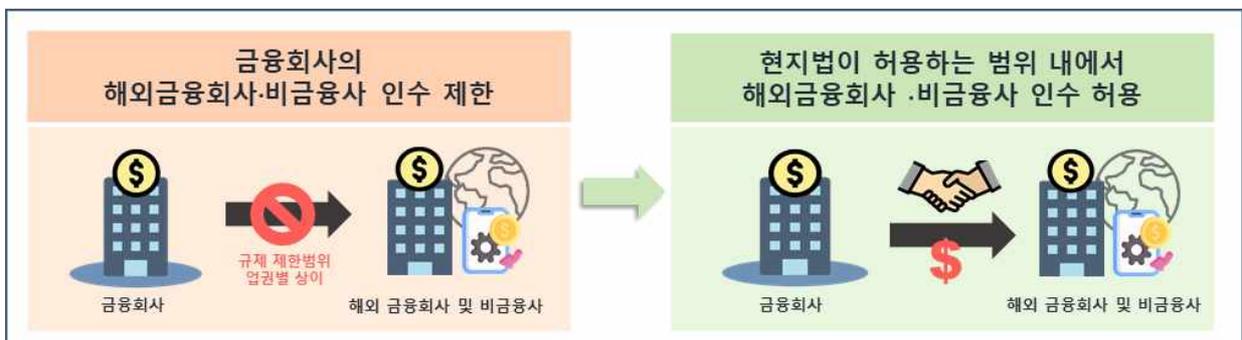
1 해외 자회사 인수·설립 관련 규제 완화

◆ 금융사 해외진출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-비금융간 융복합 서비스를 통한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

1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대폭 확대

- (현행)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및 이해상충 방지를 막기 위해 금융사 및 비금융자회사 소유(일정비율 이상 출자) 범위를 제한
 - 은행은 다른 회사에 대한 지분 15% 이상 출자를 제한하고 있으며, 금융업이나 직접 관련 업종 등에 한해 자회사 소유 가능
 -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되며, 자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의 종류에 따라 손자회사의 범위도 제한
- (개선)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, 여전사 및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을 완화
 - 1 은행의 해외 비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
 - 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 비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
 - * 단, 해당 업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한하여 허용
 - 3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금융회사(핀테크회사)의 해외 투자 일임/자문사 소유 허용

☞ 세부방안 마련 후 은행법령,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('23.하반기)



②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

- **(현행)** 보험회사가 보험업과 관련없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 소유하려는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, 해외 자회사 인수 추진 단계에서 승인 여부의 불확실성 존재

* 보험업법 제115조(자회사의 소유)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.

- **(개선)**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

① 보험사의 해외 금융회사(은행 등) 소유를 전향적으로 허용

② 사전신고 대상인 해외 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불확실성 제거 및 절차 간소화

* 현재도 보험업과 관련없는 해외 자회사 설립요건 충족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 허용중

👉 대상·범위 등 추가검토 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('23.하반기)



2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관련 규제 완화

- ◆ 해외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 경로를 확대하여 해외 진출 및 현지 영업 관련 자금조달 애로 완화

① 해외진출 초기 은행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초과 한시적 허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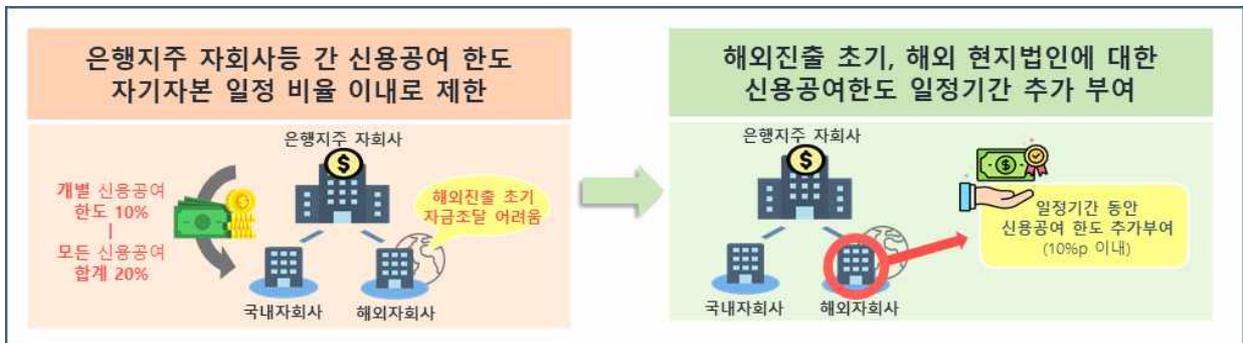
- **(현행)**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은행지주의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* 이내로 설정

- * 자회사등의 다른 개별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**한도** : (자기자본의) **10%**
 자회사등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**모든** 신용공여 **합계** : (자기자본의) **20%**

-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신용도 미흡, 담보부족 등으로 진출 초기 현지 자금조달이 어려우나,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도 제약이 있는 상황

- (개선)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일정기간(예시 : 3년간) 추가 부여(10%p 이내)

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('23.하반기)



② 해외 자회사에 대해 담보제공 허용

- (현행)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회사의 해외 보험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을 금지(채무보증만 허용)

*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의2(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) ② 보험회사는 자회사(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를 말한다)를 위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.

- 해외 자회사가 현지 영업을 위한 영업기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등 손실 발생

* 영국 보험시장(로이즈 마켓)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기금 납입이 요구되며, 국내 보험회사가 현지 은행에 국공채 등을 담보로 제공하면 현지 은행이 해외 자회사에 대해 채무 보증을 하는 방식(신용장 제도)으로 영업기금을 대체할 수 있음

- (개선) 기허용중인 채무보증 조건(총자산의 3% 한도 내, 직전분기말 지급여력비율 200% 이상 등) 범위 내에서 자회사를 위한 담보제공 허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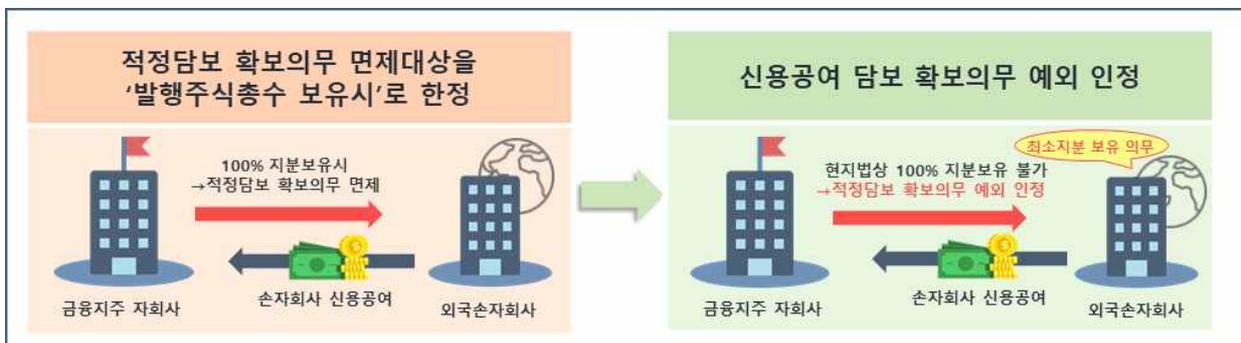
보험업법 개정안 마련('23.하반기)



③ 금융지주 외국손자회사의 적정담보 확보 의무 예외 적용

- **(현행)** 금융지주그룹 내 외국손자회사의 국내 자회사 신용공여시 적정담보 확보의무 면제 대상을 '발행주식 총수 보유시'로 한정
 - *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2조(적정담보확보기준 등) 9. 자회사등이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의 해당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
 - 일부 국가에서는 자회사 설립시 최소지분을 임직원 명의로 보유하도록 하는 등 국내와 다른 규제가 존재
- **(개선)** 현지 규제로 인해 발행주식 총수 보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적정담보 확보의무 면제
 - * 하나은행 러시아법인의 경우 최소지분 분산하여 법인 설립하였으나 100%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비조치의견서 발급한 바 있음

☞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또는 비조치 의견서



3 국내 적용을 전제로 마련된 규제의 합리적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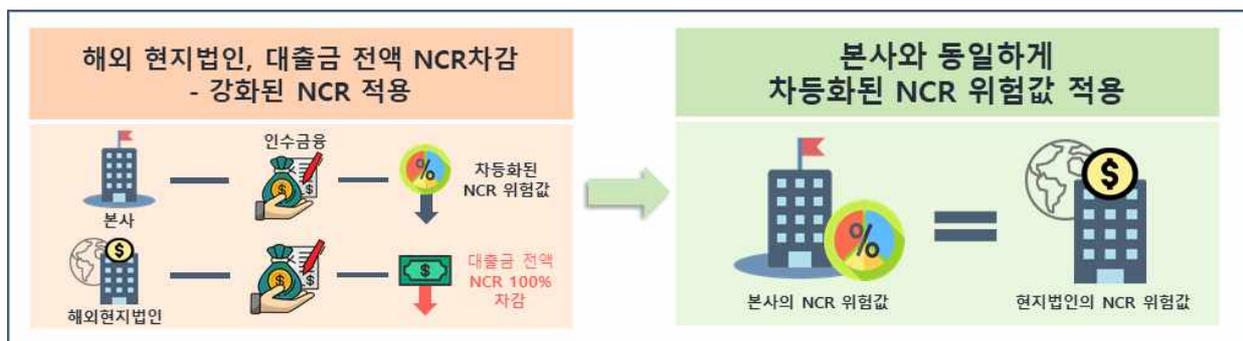
◆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규제 등 국내 적용을 전제로 한 규제는 예외를 마련 또는 적용 배제를 추진

1 해외 현지법인 인수금융 취급시 NCR 기준 합리화

- (현행)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'종합금융투자사업자'에 해당하지 않아 NCR(순자본비율) 위험값을 100% 적용
- (개선) 모기업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경우, 해외 자회사가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에도 모기업과 동일한 위험값*을 적용

*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 적용(1.6%~32%)

☞ 금융투자업감독규정 개정 (23.4분기)



2 해외금융기관에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표시 대출채권 매각 허용

- (현행) 국내 여신금융기관(해외 지점 포함)은 해외금융회사에 대출채권 매각이 곤란하여 글로벌 영업자산 익스포저 관리에 제약
- (개선) 여신금융기관의 외국 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'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'에게도 양도 가능하도록 허용

☞ 대부업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또는 비조치 의견서



③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영위 일부 허용

- **(현행)** 「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*(이하 해외진출규정)」은 해외지사를 영업활동을 위한 '지점'과 조사·업무연락 등 비영업 활동을 위한 '사무소'로 구분해 신고·보고의무 등을 부여
 - * 외국환거래법의 하위규정으로,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(외국법인의 10% 이상 지분 취득, 해외지사 설치 등)에 적용
- **(개선)** 해외에서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 한해 사무소도 영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선
 - * 콜롬비아 현지법에는 외국 재보험사의 지점 설립 관련 규정이 없는 대신, 법인과 사무소에 모두 영업활동을 허용하는 등 국내와는 상이한 법률체계 운영

👉 해외진출규정 개정방향 마련 후 규정 개정(23.하반기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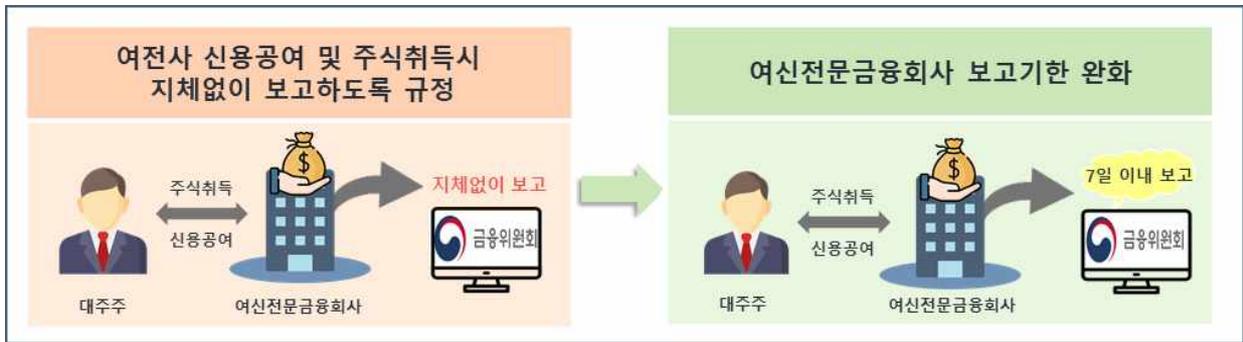
4 보고·공시 규정의 유연한 적용 기준 마련

◆ 과도하거나 해외점포에 적용하기 곤란한 보고·공시 규정을 통·폐합 하고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는 등 규제 합리화

1 여전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주식취득 보고 절차 완화

- (현행) 대주주*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후 '지체없이 보고'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적 부담
 - * 대주주의 범위에 계열회사(해외 자회사 등) 등 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
- (개선) 여전사는 수신 기능이 없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험업권과 같이 보고기한을 7일 이내로 완화

☞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마련 (23.3분기, 필요시 공문 등 우선 추진)



2 해외 투자법인 관련 중복 보고 부담 완화

- (현행) 동일한 해외투자자에 대해 금융업권법 및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중복하여 신고·보고
 - * 「해외진출규정」 제6조 제1항 및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49조의2 제3항과 제50조 제3항은 동일한 해외직접투자 행위에 대해 각기 다른 보고 절차 규정
- (개선) 개별업권법에 따라 신고·보고시, 해외진출규정에 따른 신고·보고의무를 면제하여 중복 보고 부담을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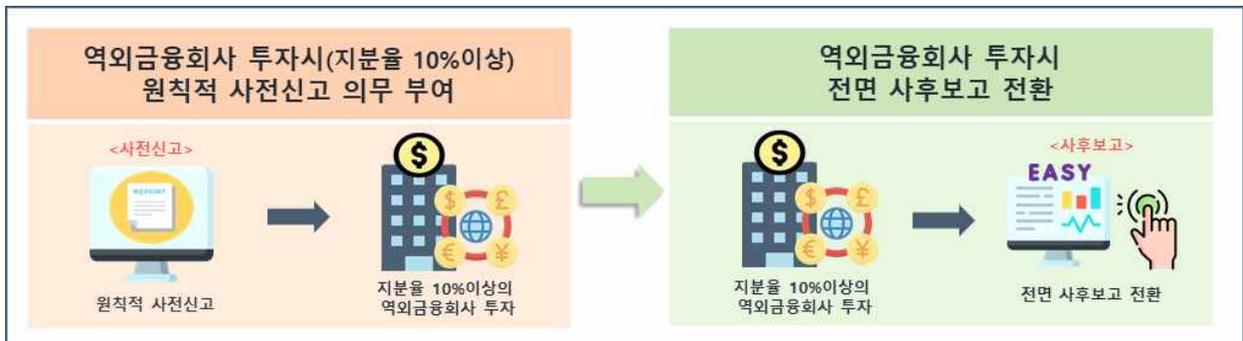
☞ 해외진출규정 개정 방향 마련 후 규정 개정(23.하반기)



3 역외금융회사 투자 관련 신고 부담 완화

- **(현행)** 해외진출규정은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* 투자시(지분을 10% 이상)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의무 부여
 - *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,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**설립지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**
- 신고 및 수리에 소용되는 기간(통상 5~7일)으로 인해, 투자기회 상실 등의 문제 발생
- **(개선)**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하여, 금융회사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지원

☞ 해외진출규정 개정방향 마련 후 규정 개정(~'23.4분기)



5 건전성·내부통제 개선 중심의 검사·제재

◆ 취약요인 개선 중심의 사전예방적 검사를 통해 금융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내부통제·리스크관리 역량 제고

1 기관제재 갈음 MOU 등 활용 활성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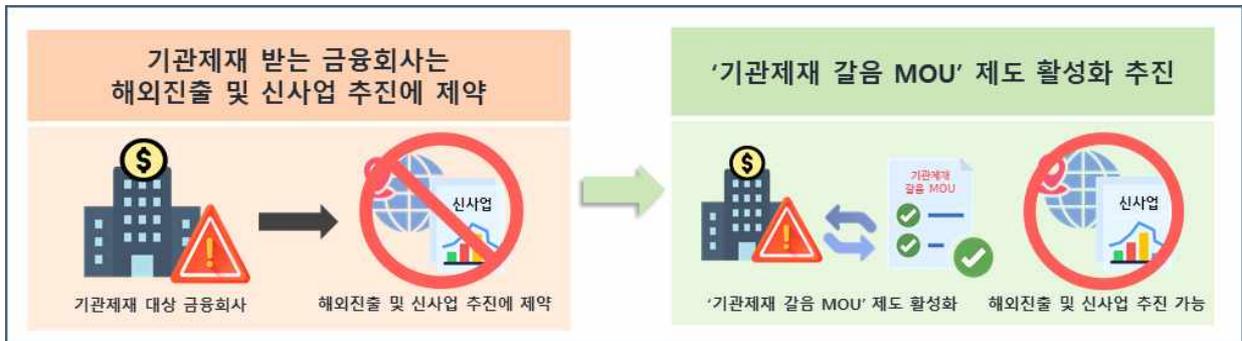
- **(현행)** 법규위반 등으로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기관제재를 받는 금융회사는 해외진출 및 신사업 추진에 제약* 발생
 - * 금융회사가 기관경고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타 금융회사의 대주주 결격 사유 발생, 해외점포 신설에 대한 현지 인허가 업무 처리 시 결격 사유 해당 가능 등

- 규정상 위규 금융회사에 대해 기관제재 대신 '기관제재 같음 MOU 등'의 활용이 가능하나, 적용 사례**가 많지 않은 상황

* 체결 요건 : ① 행위 당시 위법·부당 여부가 불분명하였거나 그에 대한 업계 전반의 인식 없이 행하여진 경우, ②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고 제재보다 확약서·양해각서 이행에 의한 자율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** '19년 외국환거래 취급과 관련하여 5개 은행에 대해 동 제도 활용

- (개선) 제재보다는 자율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'기관제재 같음 MOU 등'의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등 동 제도의 활성화 추진



② 현지 규제 및 시장상황을 고려한 예방·개선 중심 검사 운영

- (현행) 해외에서 가능한 영업 형태이나 국내법에 의한 제재 대상인 경우 금융회사의 검사·제재 리스크 우려 소지
- (개선) 해외법인에 대한 현지검사시 현지 규제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고, 건전성·내부통제 측면의 예방·개선 중심 검사 실시



IV. 기대효과

① 금융회사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.

- 해외 자회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져 다양한 금융 니즈에 맞춘 비즈니스 영역 다양화 및 수익 모델 다각화 가능
- 풍부한 인구와 미래 경제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외 시장을 공략하여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익성을 개선

② 해외에서 더욱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합니다.

-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확대되면 모회사의 자금 지원을 통해 현지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
-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이 허용되면 신용장 제도의 활용이 가능하여 자본금 유출없이 해외 사업규모 확대
- 금융당국의 업무 개선에 중점을 두는 사전예방적 검사를 통해 해외진출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 도모

③ 중복 보고 · 과도한 공시 등 행정 부담이 완화됩니다.

- 중복 보고의 해소, 공시 규정의 합리화, 사후보고로의 전환 등 실질적 행정 부담 완화

④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.

-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의 결과로 금융서비스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 효과
- 금융산업 글로벌화가 새로운 서비스 수출항목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기회

V. 향후계획

1 금번 규제개선 검토결과 이행

- (수용과제) '23년 하반기내 법령 개정, 유권해석 등의 필요 조치 신속하게 추진
- (증장기검토)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등 논의 지속 추진

2 금융회사·핀테크의 해외진출 및 금융인프라 수출 지원 (23.하반기 중 발표 예정)

① 지속적인 규제개선 검토

- 국내·외 간담회 및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규제 개선 방향 및 금융산업 글로벌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

② 주요국 현지 외교공관 등을 통해 해외진출 협력 네트워크 강화

- 한국 금융회사 진출이 많은 국가에 영업 및 규제현황 공유, 현지 금융당국과의 소통 등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추진
- 핀테크 기업의 경우, 핀테크지원센터 및 해외진출 거점(예: 금융회사 핀테크랩) 등을 활용하여 현지 금융회사와의 협업·매칭 지원

③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역할 강화를 통해 금융인프라 해외 수출 지원

- 해외금융협력협의회*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내 금융사 및 금융결제원, 거래소 등 금융인프라 등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 마련

* 국내 25개 공공·민간금융기관으로 구성('13~)

개선과제	조치사항	추진일정
① 해외 자회사 인수·설립 관련 규제완화		
①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규제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은행의 해외 비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▪ 금융지주 자회사의 해외 비금융회사 소유 허용 ▪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사의 해외 투자일임/자문사 소유 허용 	세부방안 발표(3분기) 후 은행법령 개정 '금융지주 제도개선 방안 발표(3분기) 후 필요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* 타법과 정합성 고려 '금융지주 제도개선 방안 발표(3분기) 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	'23.4Q '23.4Q '23.4Q
②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	방안 마련 및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	'23.4Q
②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규제 완화		
① 해외진출 초기 은행지주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한도 초과 한시적 적용	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	'23.4Q
② 보험사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허용	보험업법 개정 추진	'23.4Q 개정안마련
③ 금융지주 자회사 신용공여시 적정담보 확보 의무 예외 적용	유권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	요청시
③ 국내 적용을 전제로 마련된 규제의 합리적 개선		
① <기발표>해외 현지법인 인수금융 취급시 NCR기준 합리화	금융투자업감독규정 개정	'23.4Q
② <기발표>해외금융기관에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 매각 허용	유권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	요청시
③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영위 일부 허용	해외진출규정 개정방향 마련 ('23.8월) 후 규정 개정	'23.4Q
④ 보고·공시 규정의 유연한 적용		
① 여전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주식 취득 보고 절차 완화	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*필요시 공문 등 우선 추진	'23.3Q 개정안마련
② 해외 투자법인 관련 중복 보고 부담 완화	해외진출규정 개정방향 마련 ('23.8월) 후 규정 개정	'23.4Q
③ 역외금융회사 투자 관련 신고 부담 완화	해외진출규정 개정방향 마련 ('23.8월) 후 규정 개정	'23.4Q
⑤ 건전성·내부통제 개선 중심의 검사·제재		
① 기관제재 갈음 MOU등 활용 활성화	-	즉시
② 현지 상황을 고려한 예방·개선 중심 검사운영	-	즉시